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가단2920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D, E

피 고 F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22. 5. 2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6. 17. 접수 제71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0. 12. 22. H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그 후 H 주식회사는 2013. 2. 2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I 주식회사에게, I 주식회사는 2017.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일 무렵 G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J, K의 공동소유였는데(각 2분의 1지분), K가 2022. 5. 29.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인 J, G, L, 피고는 2022. 5. 29.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22. 6. 1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12. 26.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11,190,968원(원금 2,356,475원, 이자 8,834,493원)이다.

라. 한편 G은 이 사건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 마포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M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G이 이 사건 지분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G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지분 중 9분의 1지분(이 사건

지분 × 법정상속분 2/9)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9. 12.경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 망인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무도 피고가 대신 변제하는 등 망인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기에 이 사건 협의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지분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협의에 따라 G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다면, 그 재산분할결과가 G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G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사해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1. 22.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20. 11. 18. 말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3. 1. 10.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피고 명의의 O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망인 명의의 N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월 22일 무렵 150만 원 정도가 이체되었고, 곧바로 망인 명의의 N 예금계좌에서 대출원리금으로 매월 150만 원 정도가 상환되었다. 위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② 그 외에도 피고는 망인과 J와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대금도 대신 결제해주기도 하였고, 실질적으로 망인을 부양하였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J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언니인 L은 ‘피고가 망인과 J에 대한 부양을 모두 책임지고 생활을 하게끔 하였고, 담보대출도 전액 변제하는 등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현재도 J를 지속적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망인의 남은 채무도 변제하고 있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협의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혜원

별지